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2.
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12월 3일, 한지아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2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1.14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

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(2025.1.22.)

상정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1.23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한지아의원)

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, 세

세계보건기구(WHO)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“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”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정경윤)

개정안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‘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’ 및 ‘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’ 외에 ‘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’을 추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.

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약 1만 5,000건 발생하여 매해 150~3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음주폐해의 대표적인 유형이므로,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함으로써 음주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.

한편,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의 실효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,

첫째, 현재 주류 용기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외 6개의 법률¹⁾에서 각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(보건복지부), 「청소년 보호법」(여성가족부), 「주류면허법」(기획재정부, 국세청), 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」(식약처), 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(농림축산식품부)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환경부), 「소비자기본법」(공정거래위원회)

각 표기 내용을 관찰하고 있어, 음주운전 경고문구가 추가될 경우 주류 판매 용기에 표기되는 내용이 많아져 가독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문구 표기 면적 확대 또는 경고그림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다음으로,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포 후 6개월은 개정안 시행준비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미애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